

기술이전, 독점판매총판계약 Licensee 중도해지, 위약금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6가합580765 판결



1. 계약조항 - 원고 라이선서 vs 피고 라이선서

위약금 약정 - 제15조 "일방적 해지 시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변상한다"

계약분쟁 및 licensor 위약금 청구 + 피고 Licensee의 방어 주장 요지 - 특허기

술 효용가치 없음, 원고 licensor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 원고의 기망행위 주장

2. 판결요지 - 라이선서의 기술이전채무 불이행이라는 피고 라이선서의 주장 불인정,

일방적 계약해지 인정 BUT 위약금 조항 적용, 실제 금액은 감액 판결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 금액 감축 근거

- ① 총판계약에 따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 회사는 수억 원을 지출하였으나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수요자가 원고의 특허 및 이에 따른 제품의 생산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위 총판계약에 따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③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총판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미 2억 2,000만 원과 6개월간 연구비를 지급한 점, ④ 그럼에도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됨으로써 피고에게도 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총판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되는 위약금 5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금액을 감액하여 그 금액의 60%인 3억 원(= 5억 원 X 0.6)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국제계약, 영문계약, 계약분쟁, 손해배상, 민형사소송,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